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유상범 · 박성민 · 조배숙
조정훈 · 장동혁 · 정점식
안철수 · 광규택 · 진종오
권영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, 아동학대 예방,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.

그러나,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 · 작동방식 등의 지식, 합리적 소비습관,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실제로 「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」 보고서 등에 따르면,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.1%에 달했으며 24.3%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,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 · 경제교육

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·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,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(안 제38조제1항,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2호 중 “자산형성지원”을 “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중 “자산관리 지원사업”을 “금융·경제 교육 등 자산관리 지원사업”으로 한다.

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제42조에 따라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1. 1의2. (생략)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“ <u>자산형성 지원</u> ”이라 한다) 3. ~ 6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38조(자립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(“ <u>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</u> ”-----)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
제42조(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<u>자산관리 지원사업</u> 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42조(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융·경제 교육 등 자산관리 지원사업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57조(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) (생략)	제57조(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) ① (현행 제목외의 부분과

<u><신 설></u>	같음) <u>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이 제42조에 따라 자산형 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.</u>
--------------------	--